

올바른 언론문화를 위한 시정권고

언론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하면서 피해자의 주소 등을 나타내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면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의 심적 고통은 과연 어떠할까? 과거에는 이런 기사가 자주 눈에 띄었지만, 지금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풍토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며, 여기에 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많은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공개 ▲범죄 피의자, 피고인의 신원공개 ▲특정강력범죄의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의 신원공개 ▲마약의 명칭,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방법 등의 상세보도 ▲자살자 신원공개, 자살방법 상세묘사 등 인권침해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침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31년간 언론에 총 6,638건의 시정권고를 했으며, 이 중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2,100건(31.6%), 마약 용량·용법 등 공개가 1,176건(17.7%), 특정강력범죄의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가 1,041건(15.7%), 자살 관련 보도가 855건(12.9%),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가 721건(10.9%) 등으로 나타났다. 위

원회의 지속적인 시정권고 활동으로 성폭력 피해자와 특정강력범죄의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에 대해서는 위반 사례가 이전에 비해 급감했다.

혹자는 시정권고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시정권고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언론인과 심층인터뷰를 한 결과, 언론인들은 대체로 시정권고가 강제성이 없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내용이 타당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하려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현장 기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해 간과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주의를 갖도록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시정권고 개선과 관련하여 시정권고심의기준을 보다 더 구체화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에 대해 일선 기자들을 상대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정권고가 잘못을 전제로 결정된다거나 권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므로 다른 용어로 순화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언론에 대한 감시·통제가 아니라 올바른 언론문화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시정권고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다.

• 글: 이재범(홍보팀 차장)